몽골 법령정보시스템 현황 파악 및 몽골과의 교류·협력 증진 방안 연구를 위한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

2018. 11.

법제처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기 획 조 정 관 실
(법제정보담당관실)

보고 목차

Ⅰ.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1
2. 출장자 및 주요 일정 ····· 2

Ⅱ. 몽골의 입법 체계 및 법령정보 서비스 현황 파악

1. 회의 개요 ····· 4
2.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 5
3. 질의 · 답변 ····· 10
4. 회의 관련 사진 ····· 11

Ⅲ.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현황 소개

1. 회의 개요 ····· 12
2.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법령정보 업데이트 프로그램 소개 ····· 13
3. 질의 · 답변 ····· 14
4. 회의 관련 사진 ····· 19

Ⅳ. 정부입법시스템 등의 구축 및 운영 현황 소개

1. 회의 개요 ····· 20
2. 정부입법지원센터 및 법령안편집기 등 소개 ····· 21
3. 질의 · 답변 ····· 21
4. 회의 관련 사진 ····· 23

Ⅴ. 우리나라와 몽골간 교류 협력 방안 논의

1. 회의 개요 ····· 24
2. 주요 논의 사항 ····· 24
3. 질의 · 답변 ····· 30
4. 회의 관련 사진 ····· 30

Ⅵ. 국외 출장에 따른 시사점 ····· 31

Ⅰ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우리나라 법령정보시스템 소개 및 몽골 법령정보시스템 현황 파악

○ 몽골 등으로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 대한 기술 전수 및 시스템 보급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 몽골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 몽골 법무내무부에서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정부입법시스템, 법령안편집기,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등 소개

□ 우리나라와 몽골 간 교류 협력 증진 방안 등 연구

○ 향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급 요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령정보시스템 지원국 선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함에 따라,

- 수요국의 법령정보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연구 자료를 확보하고, 해외 법령정보시스템 보급 확대를 모색하는 등 개발도상국가와의 교류 협력 증진 방안 연구

* 대한민국 법제처와 몽골 법무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2014. 4. 25.) 및 상호 협력계획 마련(2017. 9. 14.)

□ 기대 효과

○ 개발도상국가에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이식하게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에 유리한 경제 환경 조성

○ 몽골에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의 우수성과 지원계획 등을 알림으로써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안편집기 등에 대한 해외 수출 기회 마련

○ 몽골과의 교류협력 강화로 양국 간에 신뢰 및 우호 증진

○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한 지원국 선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연구자료 확보

2. 출장자 및 주요 일정

□ 출장 국가 및 도시

○ 몽골(울란바토르)

□ 방문 기관

○ 몽골 법무내무부

□ 출장자: 1명

○ 기획조정실 법제정보담당관실 정승택 사무관

※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몽골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추진계획(ISP) 수립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단(통역 포함 4인)과 동행

□ 출장 일정

○ 2018. 10. 21.(일) ~ 2018. 10. 24.(수) / 3박 4일

날짜 (요일)	주 요 일 정	참석자	장소
10. 21. (일)	· 출국(인천 → 울란바토르)	출장자 사업단	
10. 22. (월)	· 몽골 법무내무부 국제협력국장 면담 (성명: BATULZII Tumurbaatar) · 몽골의 법령 체계 및 입법 제도 파악, 몽골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파악	출장자 사업단 몽골직원	대회의실 (3층)
10. 23. (화)	· 우리나라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스마트폰 앱 서비스, 공포법령 업데이트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 정부입법지원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편집기 등에 대한 소개	〃	대회의실 (3층)
10. 24. (수)	· 대한민국 법령정보시스템 기반의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례 소개 · 법무내무부와 교류 협력 방안 논의	〃	소회의실 (1층)
10. 25. (목)	· 인천 도착(울란바토르 → 인천)	출장자	

※ 당초 2018. 10. 24.(수) 23:15에 울란바토르를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귀국할 예정이였으나, 울란바토르 공항의 기상 악화로 비행기가 22시간 지연 운항하게 됨에 따라, 2018. 10. 25.(목) 21:15 비행기로 출발하여 2018. 10. 26.(금) 01:35에 인천공항 도착

※ 몽골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추진계획(ISP) 수립 사업 사업단: 2018. 10. 21.(일) ~ 2018. 10. 26.(금) / 5박 6일

Ⅱ 몽골의 입법 체계 및 법령정보 서비스 현황 파악

1. 회의 개요

□ **일시**: 10. 22.(월), 13:30 ~ 17:00

□ **장소**: 몽골 법무내무부 대회의실(1층)

□ **참석자**

○ **(몽골)** 법무내무부 법률협력국(TREATY, LAW AND COOPERATION Department) BATULZII Tumurbaatar Direator 등 10명

○ **(출장자)** 정승택 사무관

○ **(사업단)** 김영호 대표, 김주성 박사, 김명효 이사 등 4명

□ **회의 주제**

○ 몽골 법무내무부, 국가법률연구소 직원 등과 상견례 및 이번 방문의 목적 및 추진일정 등 설명

○ 몽골의 법령종류 및 입법 방식 등을 파악하고, 몽골의 법령정보 DB 구축 현황,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등 조사

○ 몽골의 법령정보 업데이트 현황 및 법령정보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령정보 서비스에서의 향후 개선사항 등에 의견 수렴

2.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조직 개요

ㅇ 몽골 법무내무부는 우리나라의 법무부, 법제처, 행정안전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ㅇ 행정관리국, 법령정책국, 조약 · 법률협력국, 정책 · 실행협력국, 모니터링 · 평가 · 감사국 등 5개 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 행정관리부 소속 재정 · 투자과와 법령정책부 소속 행정규정 · 규범 심사과 등 2개의 하위 부서가 있음.

- 전체 인원은 108명이나 휴직자를 포함하는 수치이므로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은 100명 정도임.

ㅇ 법무내무부 산하 국가법률연구소(The National Legal Institute)가 있고, 법률 및 제도 연구, 법령정보시스템 등을 개발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체 인원은 약 40명임.

- 참고로, 법무내무부 및 국가법률연구소 등에서 법령정보시스템을 관리 및 운영하는 인력은 프로그램 개발 1명, 법령정보 관리 2명, 서버 장비 관리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몽골의 법령 체계 및 법령본문의 구조

ㅇ 몽골은 독일과의 장기간에 걸친 교류를 통해 대륙법계 법령 체계 및 제 · 개정 방식을 도입하여 법령을 입안 및 공포하고 있어 우리

나라의 법령 체계와 유사함.

ㅇ 몽골의 법령 체계는 헌법 - 조약 - 법률 - 하위법령(대통령령, 부령, 기관 명령, 지방 조례, 국회 및 기관 결정) 등 13개의 법령종류로 구성되어 있음.

- 국제조약을 법률보다 상위법령으로 간주하고, 헌법과 법률은 의원, 대통령, 정부에서 개정 발의가 가능한 것이 특징임.

- 정부결정과 대통령령은 동격이며, 행정명령은 우리나라의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행정규칙 등과 유사함.

헌법 (Constitution)
국제조약 (Treaties)
법률 (Laws)
행정명령 (Administrative Nomative Acts)
(국회결정, 대통령령, 정부결정, 부처령, 국회 소속기관 명령, 부처 소속기관 명령, 지방의회 조례, 시 · 도 기관장 결정, 특정 권한을 받은 기관의 결정)

<몽골의 법령 체계>

ㅇ 몽골의 법령본문은 법령명, Chapter(장), Section(절), Article(조), Paragraph(항), Sub Paragraph(호), Item(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 조 · 항 · 호 · 목의 번호는 숫자에 점을 붙이는 방식으로 부여하고 있음. 예를 들어, 제4조제3항제5호제2목은 “4.3.6.2” 형태로 붙임.

- 가지 번호는 조 · 항 · 호 · 목에 아라비아 숫자를 위 첨자 형태로 붙이는 방식으로 부여하고 있음. 예를 들어, 제4조의5제3항제6호의2제2목은

"4^{5}.3.6^{2}.2" 형태로 부여하고 있고, 가지 번호는 1부터 붙이는 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특징임.

ㅇ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부칙에 기술하고 있으나 몽골에서는 부칙을 별도로 두지 않고 본문내용 아래 부분에 기술하고 있으며,

- 별표는 부록 형식으로 붙이고 있고, 여러 개의 별표나 별지 서식을 1개의 파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임.

ㅇ 법률에는 조문 제목을 붙이고 있으나, 대통령령 이하 하위법령에서는 조문 제목을 붙이지 않고 조문내용을 기술하고 있음.

ㅇ 상위법령과 하위법령과의 관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령 본문에 상위 법령명을 기술하여 법령의 근거로 인용하거나,

- 하위 법령종류를 상위법령 본문에 기술하여 상위법령에서 기술하기 어려운 상세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법령정보시스템 및 법령정보 DB 구축 현황

ㅇ 몽골 법무내무부에서는 법령정보시스템(http://www.legalinfo.mn)을 2006년 9월에 자체 개발하고, 2012년에 World Bank(WB)의 지원을 받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법령정보 서비스 내용에는 현행법령 전체와 도서정보, 전문자료, 뉴스 등을 몽골어로 제공하고 있음.

- 법령정보 사이트는 몽골 전체 웹사이트에서 47위(사용자수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일평균 약 2,700명(전체 인구: 약 312만 명)이 방문하여 법령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현재 몽골의 현행법령은 법률 686건, 정부명령 4,555건, 부령 856건 등 전체 9,368건에 이르고 있고, 2017년 기준으로 연간 662건의 법령이 제・개정되고 있음.

- 몽골의 법령정보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헌법, 국제법, 현행법령 및 폐지법령, 헌법결정례, 대법원 결정 등 전체 12,375건이 법령정보시스템에 DB로 구축되어 있으며,

법령종류		현행법령	폐지법령	등록건수
헌법 (Constitution)		1	0	1
국제법/협약 (Treaties)		536	5	541
법률 (Laws)		686	235	921
행정명령 (Administrative Normative Acts)	국회결정	1,832	179	2,011
	대통령령	184	54	238
	정부명령	4,555	1,233	5,788
	부처령	856	727	1,583
	국회 소속기관 명령	30	160	190
	부처 소속기관 명령	210	177	387
	지방의회 조례	75	0	75
	시・도 기관장 결정	18	117	135
	특별 권한 기관 결정	8	3	11
헌법결정례		201	0	201
대법원결정		176	117	293
합계		**9,368**	**3,007**	**12,375**

<몽골의 법령정보 DB 구축 현황>

- 참고로, 법령이 제정된 이후 현행법령 또는 폐지법령 이전까지의 모든 연혁법령은 아직까지 DB로 구축하지 못하고, 각급 공포 기관에서 종이, 파일 등으로 보관하여 있어 일반국민이 인터넷 등에서

검색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음.

□ 몽골 법령정보시스템의 문제점

ㅇ 법령정보 관리 측면에서는 법령정보 관리 기관에서 공포법령을 수작업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어 법령내용에 오류가 많고, 법령정보 서비스에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 또, 법령정보 관리 시스템에 연혁법령, 별첨(부록), 이미지 및 표, 법령/조문 간 연결정보, 법령안 검토자료, 영문법령 등을 관리하는 기능이 없어, 법령정보와 관련된 3단비교표, 신구법비교표, 법령체계도 등을 서비스하기가 곤란하고,

- 몽골 법령정보시스템에서 현행법령만을 단순 텍스트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는 일반국민의 법령정보 서비스 요구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ㅇ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는 서버 장비 등이 노후화되었고, DBMS는 PC나 워크스테이션에서 사용하는 My_SQL를 사용하고 있어 대용량 법령정보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 검색엔진을 도입하지 않고, DB를 Full text 검색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어 법령정보에 대한 통합검색이 곤란한 문제가 있음.

ㅇ 시스템 개발 측면에서는 표준 개발 방식(프레임워크)을 도입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추가로 반영하기 곤란하는 등 시스템의 확장성이 떨어지고, 시스템 유지·보수가 용이하지 않아, 법령정보 서비스 등

에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3. 질의 · 답변

ㅇ (**출장자**) 몽골 법령정보시스템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는가?

- (**몽골**) 2006년 9월에 자체 법령정보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으나 법령정보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아, 2012년에 World Bank에 다시 사업예산을 요청하여 법령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였음.

- 이후 개발업체의 도움을 받아 법령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나 사업예산이 없고, 민간업체의 개발 인력이 퇴직하여 법령정보시스템 유지 · 보수 및 업그레이드가 완전히 중단됨.

ㅇ (**출장자**) 몽골 법령정보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 (**몽골**)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선진국의 법령정보시스템을 상세하게 벤치마킹한 사례가 없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 것은 아님.

- 다만,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폰 서비스 개선, 대용량 DBMS 도입, 검색엔진 구입 등을 위해 2~3년 전부터 매년 한국의 KOICA, 미국의 지원단체 등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시스템 유지 · 보수 사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요청이 거절됨.

ㅇ (**출장자**) 몽골은 국토 면적이 넓고, 전체 인구가 작아 전국토에

WIFI 등의 네트워크가 수월하지 않아, 이를 위해 스마폰을 이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노력을 경주한 적이 있습니까?

- (**몽골**) 몽골의 사정을 감안하여 법령정보 스마트폰 서비스를 위해 스마트폰 앱(App)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나, 법령정보 DB의 구조 변경이나 오류로 인하여 앱을 수시로 개선해야 하는데 유지·보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서비스가 중단됨.

- (**출장자**) 한국에서 스마트폰 앱을 아이폰용과 안드로이드폰용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앱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기기나 운영체계 버전에 따라 수시로 변경해주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향후 스마트폰 앱으로 법령정보를 서비스하는 것보도 스마트폰용 법령정보 사이트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몽골**) 향후 법령정보 서비스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음.

4. 회의 관련 사진



<몽골의 법령정보시스템 현황 파악 모습>

Ⅲ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현황 소개

1. 회의 개요

□ **일시**: 10. 23.(화), 09:30 ~ 12:00

□ **장소**: 몽골 법무내무부 대회의실(3층)

□ **참석자**

○ **(몽골)** 법무내무부 법률협력국 BATULZII Tumurbaatar Direator, 국회 직원 등 9명

○ **(출장자)** 정승택 사무관

○ **(사업단)** 김영호 대표, 김주성 박사, 김명효 이사 등 4명

□ **회의 내용**

○ 몽골 법무내무부에서 향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추진계획(ISP)을 수립하고 있음에 따라,

- 우리나라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 서비스 기능 위주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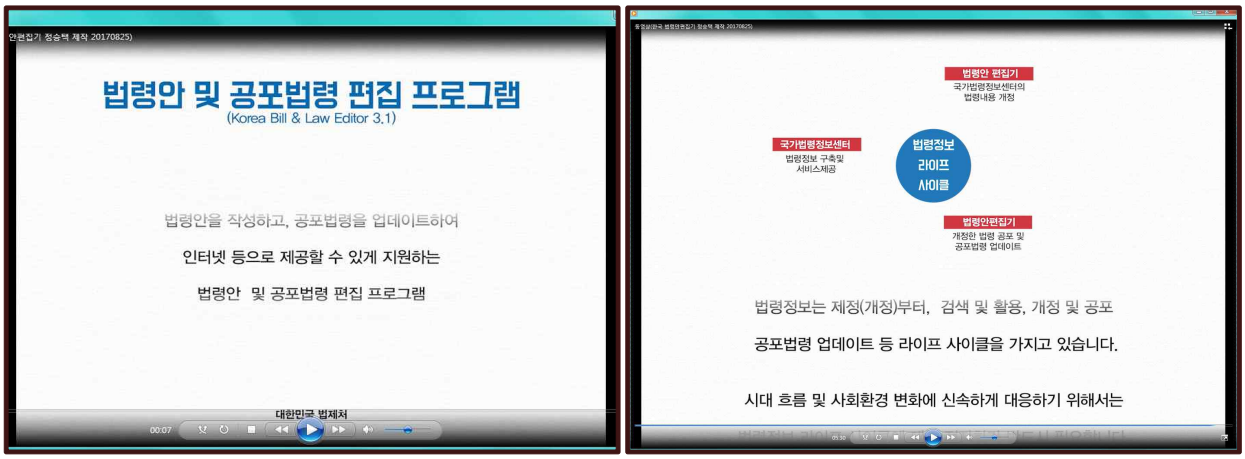
○ 법령정보 서비스 일부 기능에 대한 데이터 구축 알고리즘 등을 설명하고 구축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 및 경험 등 공유

2.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법령정보 업데이트 프로그램 소개

□ 진행 순서

○ 동영상 실행 → 파워포인트(PPT) 자료 설명 →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공포법령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직접 시연하는 순서로 진행함.

-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법령안 입안부터 법령정보 서비스까지 법령정보 관리 절차 및 인프라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One - Cycle로 연결되었음을 하나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함.



<법령정보 서비스 One - Cycle 동영상 화면>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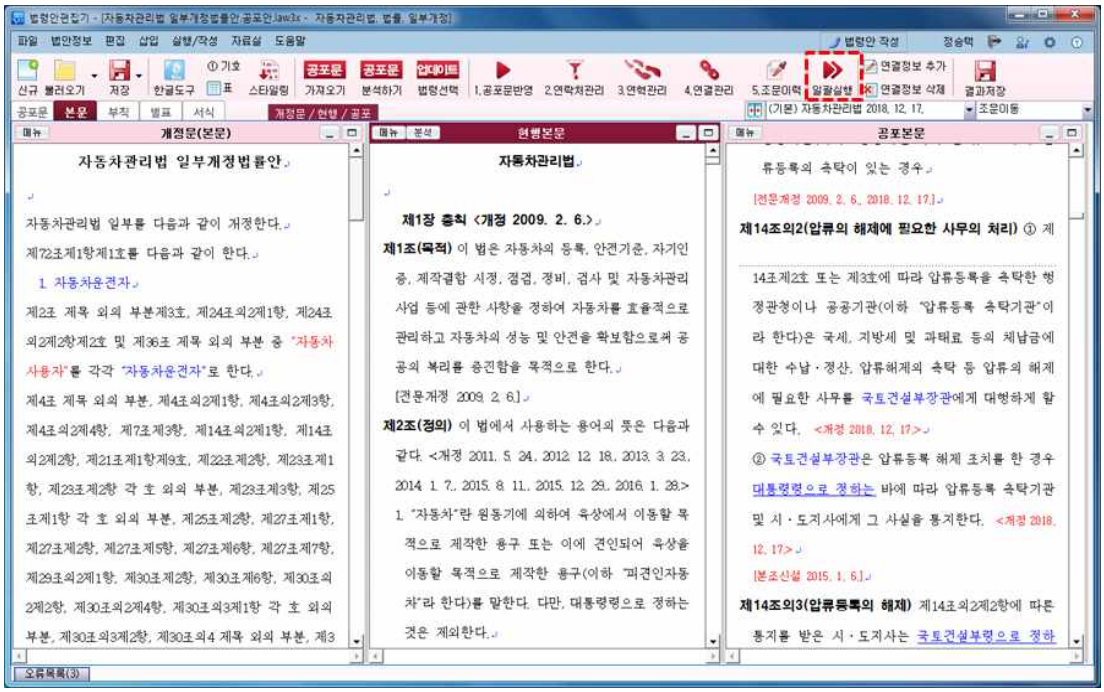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 서비스 종류를 메인 메뉴 중심으로 소개함.

○ 몽골측에서 관심이 많은 법령정보 검색 방법 및 검색 범위, 검색어 입력 방법, 화면내 검색방법 등을 소개하고, 직접 검색어를 입력하여 정확한 결과가 검색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시연함.

○ 법령정보를 수작업으로 업데이트하게 되면, 법령정보에 오류가

많고 법령정보 업데이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업데이트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등,

- 법령정보 업데이트 과정을 자동화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공포법령 내용에서 법령정보 업데이트 대상을 시행일자별 및 타법별로 추출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시연함.



<법령정보 업데이트 프로그램 화면>

3. 질의 · 답변

○ (**몽골**) 한국의 법령종류를 설명해 주시고 법령종류별로 법령정보가 어떻게 등록 및 관리되고 있는지 법령정보 관리 방안은?

- (**출장자**) 어제 몽골의 법령종류와 입법 체계 및 방식 등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에서 몽골과 우리나라의 법령종류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한국에도 헌법과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처 부령, 대통령 훈령 국무총리훈령, 중앙행정기관의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 행정 규칙이 있고, 약 200여개가 넘는 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령은 법제처에서 한꺼번에 관리하고 있고, 자치단체의 조례, 판례나 위헌결정례 등은 법령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음.

- 법제처에서 이렇게 각급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법령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것임.

ㅇ (**몽골**)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방문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고, 다양한 법령정보에 대한 비교 및 수집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등 법령정보 서비스 수준이 매우 높아서 놀랍다. 몽골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

- (**출장자**) 각 기관마다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서 출발한 것이 국가법령정보센터임. 3단비교표, 신구법비교표, 조문연혁비교표, 법령체계도 등은 법령정보를 기반으로 부가적으로 생산한 참고 자료임.

- 향후 법령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데 있어 이러한 서비스를 고려하면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법령정보 비교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법령정보 DB가 잘못 구축되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므로 법령정보 비교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보다는 법령정보 DB 구축에

집중하여야 함.

ㅇ (**몽골**) 대법원 등과 법령정보와 판례를 서로 주고 받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는가? 국회나 대법원, 다른 부처에서는 법령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 (**출장자**) 초기에 법령정보나 판례를 대법원과 공동으로 구축하였으며, 당시에 법령정보를 상호 공유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최근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어 업무 협약 의미가 감소되었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전체 현행법령은 물론 매일 업데이트하는 최신의 법령정보를 일반국민이나 기관이 무료로 다운받아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해, 법령정보를 XML 형태로 가공하여 특정 폴더에 저장하면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Open API 방식을 구현하여 지원하고 있음.

- 국회, 대법원 등 법령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는 XML 형태의 법령정보 업데이트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매일 다운받아 법령정보 DB를 구축할 수 있고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법령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기관은 약 700여 개에 이르고 있음.

ㅇ (**몽골**) 지금까지 독일, 미국, 일본 등의 법령정보시스템을 두루 경험하였지만 공포법령을 자동 업데이트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였고 외국에 보급한 사례가 있는가?

- (**출장자**) 한국에서는 법령안 입안 단계부터 법령내용이나 법령안

작성 방법 등이 표준화되어 있어 자동화가 가능하였음. 이 부분에 대한 자동화는 단기간에 성공할 수는 없고, 민간에도 전문가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

- 이에 따라,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체 개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2002년부터 내부에서 자체 인력으로 시스템을 기획 및 설계하여 코딩을 민간기업에 의뢰하였으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2016년말에 개발을 완료하였음.

- 법령정보 자동 업데이트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외부에 보급한 사례는 없고, 향후 보급을 원하는 나라가 있으면 내부 정책결정을 통해 시스템 소스 공개 및 보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ㅇ (**몽골**) 법령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법령정보 업데이트 프로그램은 종전 현행법령 내용을 어디에서 가져오는가?

- (**출장자**) 한국의 모든 법령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통합 저장되어 있고, 법령정보를 서비스하거나 부가 서비스 창출하여 내·외부에 서비스하고자 하는 기관은 이를 활용하도록 법령정보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정부입법시스템이나 법령안편집기, 법령정보 업데이트 프로그램은 물론 대부분의 정부 시스템에서 법령정보를 이용할 때는 국가법령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를 활용하고 있음.

ㅇ (**몽골**) 몽골에서는 아직도 종이법령집을 많이 활용하는데 한국에서는 전자법령집이 있는 것으로 오늘 설명하였는데, 종이 법령집은 어떻게 출판되고 유지되고 있는가?

- (**출장자**) 예전에는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보다 종이 법령집을 더 신뢰한 적이 있었고, 당시에 연간 종이 법령집 추록 판매가 약 5만 5천부에 이른 적도 있음.

- 하지만 인터넷 법령정보가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종이 법령집 판매가 급감하여 지금은 상징성으로만 남아 있고, 현재는 6개월마다 추록을 천 부 정도 출판하여 보관하고 있어 출판 분야에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ㅇ (**몽골**) 한국의 법령정보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인 것 같은데 향후 어느 방향으로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추진방향은 ?

- (**출장자**) 우리나라는 법령정보 서비스 발전이 정체 상태에 있음. 이는 정부에서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중단되었기 때문임.

- 향후 정부의 투자가 계속된다면,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릴 때 언급하였듯이 의미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문제해결 중심으로 법령정보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임.

- 현재, 많은 국가와 기업에서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법령정보 서비스가 다양한 영역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업무라고 생각함.

- 다만, 다른 나라의 대부분의 연구가 법률전문가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전문가보다는 법을 잘 모르는 일반국민의 법률적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화형 법령정보 서비스 구현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이를 통해, 향후 법령 질의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나 검토가 필요한 답변보다는 이미 확정된 내용이나 사실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고 개인적으로 이미 그런 방향으로 시스템을 기획 및 설계하고 있음.

ㅇ (**몽골**) 국가법령시스템을 운영하고 법령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해 필요한 서버 장비 등 정보자원의 물리적인 위치는?

- (**출장자**) 국가법령시스템과 관련된 서버 및 스토리지와 네트워크 장비, 데이터 백업, 시스템 보안 등은 정부 전체의 ICT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보유 및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우리 기관은 소수의 정보화 인력이 정부입법 및 국가법령 관련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정보자원을 운영할 여력이 없으며 자체 개발한 시스템만을 구축 및 관리하거나 서비스할 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음.

4. 회의 관련 사진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소개 및 시연 모습>

Ⅳ 정부입법시스템 등의 구축 및 운영 현황 소개

1. 회의 개요

□ **일시**: 10. 23.(화), 14:00 ~ 17:30

□ **장소**: 몽골 법무내무부 대회의실(3층)

□ **참석자**

○ **(몽골)** 법무내무부 법무내무부 법률협력국 UYANGA Sergei, 국회 직원 등 9명

○ **(출장자)** 정승택 사무관

○ **(사업단)** 김영호 대표, 김주성 박사, 김명효 이사 등 4명

□ **회의 내용**

○ 법제처 및 우리나라의 법령종류를 설명하고, 입법 방식 등 소개

○ 정부입법지원센터의 법령정비의견 수집, 법령안 입안·심사, 법령안 공포 과정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한편,

○ 법령해석, 의원법률안 정부 검토, 자치입법 지원, 법제교육, 법제 지식 서비스 활동 등을 설명하고,

- 국민참여입법센터의 통합입법예고, 입법 제안, 정부 및 국회의 입법

현황과 법령안에 대한 서비스 내용 등 소개

ㅇ 정부입법 과정에서 단계별로 작성 및 수정하는 법령안을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령안편집기 설명

ㅇ 향후 몽골 입법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 및 경험 등 공유

2. 정부입법지원센터 및 법령안편집기 등 소개

ㅇ 진행 순서

- 우리나라의 법령정보 및 입법방식 등 소개 → 정부입법시스템 파워포인트(PPT) 자료 설명 → 국민참여입법센터 설명 → 인터넷 및 스마트폰 국민참여입법센터 시연 → 법령안편집기를 직접 시연하는 순서로 진행함.

ㅇ 우리나라의 법령종류 및 입법 방식 등 소개

ㅇ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 소개

ㅇ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소개

ㅇ 법령안편집기 프로그램 소개

3. 질의 · 답변

ㅇ (**몽골**) 한국의 정부입법지원센터에는 입법단계별로 법령안 및 검토보고서 등이 체계적으로 잘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다. 향후 몽골에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사는?

- (**출장자**) 입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함.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면 내부에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요청하겠음.

ㅇ (**몽골**) 입법예고를 통합 서비스하고 있는데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입법예고를 어떻게 통합하였고, 온라인으로 접수된 국민의 입법의견을 어떻게 법령안 실무자에게 전달하는가?

- (**출장자**) 법제처에서 중앙부처 법령안 입법예고를 정부입법시스템에 등록하여 서비스하고 있고, 지방은 자치입법시스템에 등록된 신규 입법예고를 매일 이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음

-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중앙부처 입법예고는 정부입법시스템에서 법령안과 연결하여 법령안 실무자가 확인 및 답변하도록 구현되었고, 지방자치단체는 접수된 의견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ㅇ (**몽골**) 정부입법시스템은 물론 법령안 작성하는 법령안편집기는 몽골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의 프로그램을 몽골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 (**출장자**) 정부입법시스템을 몽골에 도입하는 것은 언어만 한국어에서 몽골어로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이 우선되어야 함.

- 다만, 법령안편집기는 현행법령과 개정할 내용을 비교해서 개정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문 작성 방법 등을 표준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인 것 같음.

ㅇ (**몽골**) 법령안 입안 과정부터 입법의견 수렴 및 반영까지 국민참여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것 같다. 우리 정부에서도 한국과 같이 국민의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

- (**출장자**)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이나 신문 등으로 입법예고 등을 광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입법참여는 매우 저조하였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입법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구현하여 입법의견 접수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맞으나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님.

- 국민의 입법의견에 대한 접수 체계는 어느 나라나 특정한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벤키마킹하거나 우수한 시스템을 가져다가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생각되며,

- 정부입법 과정에서 생산하는 법령안과 검토자료를 입법예고 등과 함께 제공하는 것이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회의 관련 사진



<정부입법시스템 및 법령안편집기 등 시연 모습>

V 우리나라와 몽골간 교류 협력 방안 협의

1. 회의 개요

□ **일시**: 10. 23.(화), 14:00 ~ 17:00

□ **장소**: 몽골 법무내무부 소회의실(1층)

□ **참석자**

○ **(몽골)** 법무내무부 법무내무부 법률협력국 UYANGA Sergei 등 6명

○ **(출장자)** 정승택 사무관

○ **(사업단)** 김영호 대표, 김주성 박사, 김명효 이사 등 4명

□ **회의 주제**

○ 국가법령시스템 및 정부입법시스템의 구축에 따른 추진성과 소개

○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례 소개

○ 몽골측의 협조 요청사항

○ 몽골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시 권고 내용

2. 주요 논의 사항

□ 국가법령시스템 및 정부입법시스템 등의 추진성과 소개

○ 1999년부터 대법원과 공동으로 종합법률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현행법령과 그 연혁, 대법원 판례 등을 제공하면서 법령정보 인터넷 서비스 시대가 개막되었음.

○ 오늘날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정보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포법령 업데이트 시스템을 개발하는 계기로,

- 모든 법령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구축하고 2010년부터 본격 서비스하기 시작하였음.

○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자수는 일일평균 43만 8천명에 달하고 있고 최신의 법령정보를 786개 민간기업 등에 제공하고 있음.

- 2011년부터는 스마트폰 앱 프로그램을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용으로 개발 및 보급하여 현재 201만 4천 명이 국가법령정보 어플을 다운받아 활용하고 있음.

○ **<정부입법시스템>** 법제처의 주요 업무별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2007년부터 본격 추진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시스템 및 데이터 간 상호 운용성 등에 문제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 2013년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법제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고, 정부입법 과정에서 부처 간 협업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입법 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 정부입법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됨.

○ 법령안편집기는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험 개발 등을 추진하였으나,

- 프로그램의 복잡성과 구현 기술의 부족 등 수많은 문제점과 시행착오로 한동안 개발 및 보류를 반복하다가 2015년부터 본격 개발하여 2016년에 개발을 완성하게 됨.

○ 현재 정부입법지원센터에는 연간 350만 7천 명이 방문하고 있고, 법령안편집기 사용자는 연간 45만 3천 명에 이르고 있으며, 입법예고 및 입법제안으로 접수되는 국민의 입법의견 건수는 연간 7만 5천 건에 달함.

□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례와 문제점 설명

○ 법제처와 미얀마 법무부 간에 교류 협력 차원에서 왕래를 활성화하다가 미얀마에서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요청하여 지원하게 됨.

○ 2016년부터 한국 KOICA의 예산으로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 및 마스터 플랜 수립 사업을 추진하여 미얀마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됨.

○ 2017년부터 마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였음.

- 법령정보관리시스템, 법령정보 서비스 홈페이지, 법령정보 업데이트를 위한 법령편집기, 모바일 홈페이지 등 4종 개발

- 미얀마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체 6,144건, 미얀마어/영어)

-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를 위한 서버 장비, 네트워크 장비 도입, 스토리지 구입, S/W 구입

- 미얀마 법령정보에 대한 분류 체계 마련 및 표준화

- 미얀마 현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령정보 업데이트 및 시스템 운영 교육하고, 한국 법령 및 법령정보시스템에 대한 소개(연수)

- 분야별 한국 전문가 파견 및 교육(개발 단계 3회, 운영 단계 3회)

○ 미얀마는 한국과 동일하게 법령종류에 따라 헌법, 국가법령, 지방법령, 조약, 판례, 별표서식 등 11개 메인 메뉴로 구성함.

- 법령명, 법령내용, 조문내용 등의 통합검색을 제공하고 소관부처별/분야별/시기별 분류검색 등을 지원하는 한편,

- 법령본문 링크 서비스, 인쇄 및 파일 저장 기능, 법령정보 URL, 조문연혁, 돋보기, 법령 캘린더, 조회자 카운터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현되었으나,

- 상하위법 조문 3단비교, 신구법 비교, 조문연혁 비교, 법령체계도 등은 아직 구현하지 못한 상태임.

○ 현재,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법령정보 관리 인력을 양성하였고 법령정보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법령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법령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음.

□ 몽골측의 협조 요청사항

ㅇ 장기적으로는, 서버 장비 도입, DBMS 및 검색엔진 등 S/W 구입, 법령정보 관리 시스템, 법령정보센터 및 모바일 홈페이지 등 법령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고,

- 법령정보시스템을 원활하게 개선 및 유지 · 보수하고, 신규 법령정보를 신속 · 정확하게 업데이트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 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ㅇ 단기적으로는, 법령정보를 쉽고 빠르게 업데이트 및 관리하고, 법령연혁 관리, 첨부파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령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 법령명, 법령내용, 조문내용 등 법령정보를 통합검색할 수 있는 검색엔진(S/W)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 법령연혁 및 별첨 관리, 관련 문서 파일 및 이미지, 3단비교표 등 다양한 콘테츠를 안정적으로 제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소용량 DBMS My_SQL를 대용량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교체하기를 원함.

- 또한, 몽골은 PC 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법령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2015년에 개발한 법령정보 앱(App)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ㅇ 현재 몽골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이므로 몽골 법무내무부에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실정임.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 몽골의 법무내무부 차관이 방문하여 한국의 법제처에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청 예정이오니 협조를 부탁함.

□ 몽골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시 권고 내용

ㅇ 일반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법령정보 서비스 방안을 장기적으로 준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ㅇ 다른 나라의 법령정보시스템을 공동 활용하고 법·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 구성, 법령내용 구조, 분류 체계, 키워드 체계 등 법령정보 관련 정보체계를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ㅇ 인터넷에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DBMS, 검색엔진, Web, WAS 등 Open Source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싶고, 선진 국가의 법령정보시스템 소스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도 필요함.

ㅇ 초기 시스템 구축 보다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함.

-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법령정보 표준화, 법령정보 업데이트 방안 마련,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ㅇ 법령정보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도입하지 말고 사용자 수요에 따라 꼭 필요한 기능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ㅇ 다른 나라나 민간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개선이 가능하도록 전문인력 확보 및 육성 등 정보화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3. 질의 · 답변

ㅇ (**출장자**) 몽골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및 마스터 플랜(ISMP) 수립 사업이 몽골 법무내무부 내부에서 어떤 절차를 걸쳐서 추진하게 되었는지?

- (**몽골**) 몽골 법무내무부에서 국가법률연구소와 협의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장관님께 보고하고 사업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걸쳐서 추진하고 있음.

4. 회의 관련 사진



<우리나라와 몽골 간 교류 협력 방안 논의 모습>

Ⅵ 국외 출장에 따른 시사점

□ 미얀마와 비교하여 몽골의 장 · 단점

○ (장점) 몽골은 공포 즉시 현행법령을 법령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 법령정보 관리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시스템 구축 사업 이후 유지 · 보수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 (단점) 다만, 몽골의 전체 인구가 너무 작고, 법령정보시스템을 이미 운영하고 있어, 홍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에서 몽골에 자체 지원 가능한 내용

○ 몽골의 법령 체계 및 제도 정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및 법령정보 관리 등을 위해 몽골 공무원의 국내 방문 연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 몽골 정부에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우리 처가 자체 개발한 법령정보시스템, 법령안편집기 등의 소스 (S/W)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법령정보시스템 해외 보급 촉진 방안

○ 법령정보시스템 보급 국가의 정보화 인력 등에 대한 연수, 기술자문 및 설계 지원, S/W 소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 법령정보시스템 개발 보다는 시스템 운영, 법령정보 표준화 및 업데이트 등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홍보 강화)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다수의 국내 IT 기업을 대상으로 법제업무 관련 시스템을 소개하고, 저개발 국가에 대한 법제업무 시스템 보급 계획 등을 설명하고,

- 영어 등 외국어 중심으로, 홍보 및 활용법 동영상 제작, 소개 책자 작성, 국내·외 전자정부 관련 행사 참여 등을 확대하는 것이 보급 확대에 유리할 것임.

○ (기술 지원) ㈜한글과컴퓨터의 아래한글(*.hwp) 기반으로 개발된 법제업무 관련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MicroSoft의 Word 기반으로 변환하고,

- 국내 해외진출 기업이 법령 입안부터 법령정보 서비스까지 각각의 기능을 쉽게 조립하거나 분리하여 제작·판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기능별로 모듈화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도입 국가에 법령정보시스템을 보급할 때마다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해당 국가의 실정에 맞게 현지화(커스터마이징)하지 않고,

- 도입 국가의 언어만을 적용하여 법령정보시스템 등을 신속하게 구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국가법령정보시스템 1 SET을 구비하여, 도입 국가에서 저비용으로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